

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· 시공업

■ 업무내용

건물·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·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·배수설비·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
Ex) 건물·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·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시공

■ 등록기준

2025.12.23 개정 기준

1. 기술능력

4인

-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
- 유허관리산업기사,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,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, 정밀측정산업기사, 기계설계기사,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
-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

※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등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.

2. 시설 · 장비

사무실	장비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	1.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-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- 화학적 산소요구량 - 부유물질 - 총 질소(TN) 및 총 인(TP) - 대장균 군수 - 염소이온농도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	2. 장비제도설비 1조(組) 이상 또는 제도 설계(CAD)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